

(붙임 2)

**「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<b>제6조(특별지원부문)</b></p> <p>① ( 생 략 )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<u>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</u>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③ ~ ④ ( 생 략 )</p>	<p><b>제6조(특별지원부문)</b></p> <p>① ( 생 략 )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<u>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</u>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③ ~ ④ ( 생 략 )</p>	<p>- 지원기한 연장</p>
<p><u>&lt; 신 설 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 &lt;2021. 8. 31.&gt;</u></p> <p>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기준은 <u>2021년 9월 1일</u> 금융기관 대출취급분(2021.11월 한도 배정)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제2조(경과조치)</b>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<u>종전 기준을 적용한다</u></p>	<p>- 부칙 신설</p> <p>- 시행일 명시</p> <p>- 경과조치 마련</p>